

1.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유효기간을
‘2024년 7월 31일’에서 ‘2027년 7월 31일’로 연장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항공안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없 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첨부

2) 행정예고 미 대상(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)으로 행정예고 생략

국토교통부예규 제000호

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중 “2024년 7월 31일”을 “2027년 7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조(유효기간) 이 지침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<u>2024년 7월 31일</u> 까지 효력을 가진다.	제13조(유효기간)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2027년 7월 31일</u> ----- -----.